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

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공직자윤리법(2020. 12. 22. 개정, 2021. 6. 23 시행)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「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(안 제2조제1항)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
-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·검사·변호사로 변경
-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, 감사관으로 지정

○ 오기사항 정비(안 제5조제3항)

-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수정

5. 검토의견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공직자윤리법」이 2020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– 안 제2조제1항

·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고,

·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·검사·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,

·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, 감사관으로 지정 하였음

붙 임: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